

충남대학교 대학원 약무임상약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8. 26.

개정 2015. 1. 26.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약무임상약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자격시험에 재응시할 경우 지난 학기에 기 합격한 과목을 선택할 시 해당 과목은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6.)

1. TEPS 455점 이상

2. TOEIC 550점 이상

3. (삭제 2015.1.26.)

4. TOEFL(iBT) 55점 이상

5. IELTS 5.5점 이상

6.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센터 모의TOEIC 550점 이상

7.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논문지도위원회)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신설 2015.1.26.)

②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1.26.)

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신설 2015.1.26.)

④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지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신설 2015.1.26.)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 박사학위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이행하여 박사학위청구논문제출 전까지 게재 논문 또는 게재 수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의 논문집에 한 편 이상 게재 또는 게재 수락서를 받아야 한다.

② ①의 게재학술지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논문제출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여야 한다.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는 인정하되,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 중 단 한명만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여야 한다. 단, 학연과정의 대학원 학생 또는 외국대학으로의 교환 대학원 학생일 경우 지도교수가 공저자일 때도 인정한다. 또한, 학생의 학위과정 중 지도교수의 퇴직 시 퇴직 지도교수의 재직기간 내 발표된 논문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후기(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6.)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5학년도 전기(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